

불법명의자동차(대포차) 운행정지 명령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운행 정지명령을 하고, 동법 제24조의2 제3항4호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운행정지 사유 :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2 제2항
2. 대상 차량

자동차			소유자		운행정지		비 고
등록번호	차명	차대번호	성명	사용본거지	요청일	사유	
41두9579	크루즈	KLAJA69SDEK568095)	배**	경상북도 구미시	'17.3.20.	소유자 신청	

3. 유의사항

가. 불법명의자동차(속칭 대포차)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위 차량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며, 이와 같은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.

나.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81조제7의2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다.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,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문의 : 영동군청 민원과(☎043)740-3106)

2017. 3. 27.

영 동 군 수